

2017년도 단체교섭 요구(안)

분 야	안 건	설 명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 분야	1. 임금 인상 및 성과보로금 지급 - 임금인상 5.2%(고과인상분 제외) - 성과보로금 300만원 지급	1. 한국노총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반영 - 4인가구 표준생계비,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,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인상 - 연말 GiGA 400만 달성에 대한 성과보로금																								
복지 분야	1.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-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 출연 2. 대부제도 신설 및 개선 -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도 신설 • 2자녀(16학기) • 자녀당 8학기 - 주택 매입/임차 대부금액 상향(1억) -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가계자금 대부는 통합(4천) - 대부상환 완료자, 상환중인자는 추가 기회 부여 3. 복지포인트 상향 및 차등폐지 - 70만P 상향 - 차등폐지 4. 기타 복지 지원 및 현실화 - 기가지니 서비스 지원 및 OTV/OTS 월 2만원 추가 지원 - 건강검진비 상향 • 직원/배우자 동일적용	1.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 출연 - 2016년 세전 당기순이익 1조 346억에 대한 5% 2. 수혜 확대로 안정적인 생활터전 기반마련 - 대학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2자녀에 한하여 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도 신설 - 대부한도 5천만원으로 된 주택 매입/임차 대부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분리하여 주택 매입/임차 대부만 1억으로 상향 -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가계자금 대부 통합(4천만원) - 대부상환 완료자 또는 상환중인자는 각 대부제도에 한하여 최고 금액까지 추가 대부기회 부여 3. 복지포인트 년 70만P 상향 및 차등 폐지 - 1월 복지포인트는 130만P ⇒ 160만P - 7월 복지포인트는 회사 영업이익익별 각 고과 평균에 40만P 상향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현재</th><th>요구안</th></tr><tr><th>S/E</th><th>G</th><th>N/U</th><th>S/E/G/N/U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0.5조이하</td><td>100P</td><td>50P</td><td>-</td><td>105P</td></tr><tr><td>0.5~1조</td><td>120P</td><td>65P</td><td>10P</td><td>120P</td></tr><tr><td>1조이상</td><td>140P</td><td>80P</td><td>20P</td><td>140P</td></tr></tbody></table> 4. 현실에 맞는 복지 구현 - 기가지니 서비스 지원 및 OTV/OTS 기본료+컨텐츠 이용료 월 3만원 지원(기존1만원 포함) - 건강검진비 A/B/C/D type 각 30/20/15/15만원을 동일적용하여 가정화목과 더불어 직원에게는 애사심 유발	구분	현재			요구안	S/E	G	N/U	S/E/G/N/U	0.5조이하	100P	50P	-	105P	0.5~1조	120P	65P	10P	120P	1조이상	140P	80P	20P	140P
구분	현재			요구안																						
	S/E	G	N/U	S/E/G/N/U																						
0.5조이하	100P	50P	-	105P																						
0.5~1조	120P	65P	10P	120P																						
1조이상	140P	80P	20P	140P																						

	- 긴급출동보전비 2.5만원 상향 - 동계휴양소 운영 - 상조 미지원자 가입기회 부여 - 20만원 상당 일체복 지급	- 긴급출동보전비 시간외수당의 3시간 적용시 6만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3.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- 연차축진 관련하여 직원 편익제공으로 애사심 부여 - 상조 지원 누락자 약 1,700명 매월 12,500원씩 10년간 지원기회 부여 - 2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과 운동화 지급
제도 개선 분야	1. 임금피크대상자 사기진작책 마련 - 임금피크 시점에 정년근무 또는 희망퇴직(희망퇴직금 기준연봉월정액 X 32개월) 선택제 도입 - 임금피크 대상자만 그룹핑하여 인사평가하는 제도 도입 - 년차 보상제(7일) 도입 - 임금성과보상금 고과 차등지급 축소 2. C직/S직 G직으로 통합	1. 임금피크대상자 사기진작 필요 - 임금피크 시작할 때 지속하여 근무할 것인지 남은 기간 보상(기준연봉월정액X32개월)후 희망퇴직 할 것인지 본인 선택제 도입 - 임금피크대상자만 그룹핑하여 인사평가 시행 (인사평가방법, 비율 등은 기존제도 유지) - 사용후 남은 잔여 년차에 대하여 희망시 연차수당 7일 보상 - S/E/G 고과자 각 400/300/100만원 ⇒ S/E/G/N/U 고과자 각 250/200/170/100/100만원 지급하여 차등지급 축소 및 N/U고과자도 임금성과보상금 지급 2. C직/S직을 G직(일반직)으로 직군 통합